

# 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-22호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11월 4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 
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를 추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내용 중 일부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및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정정
  - 계약심의위원장의 회계관직명 변경 : 경리관→재무관(안 제2조 제2항)
  - 법령변경: 건설기술관리법→건설기술 진흥법(안 제2조 제2항 제4호)
-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변경(안 제10조)

- 주민참여감독 대상자의 감독대상공사 중 공원녹지 관련공사 신설  
(안 제11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  
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  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.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.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②항 “경리관”를 “재무관”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②항 1호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②항 2호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②항 3호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②항 4호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”을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, “기술자격 취득자”를 “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②항 5호 “의하여”을 “따라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조②항 6호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3조②항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으로 한다.

제3조③항 “잔임 기간으로”를 “남은 임기로”로 한다.

제8조①항,②항,④항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③항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 1호 “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”를 “그밖에 사유 등으로”로 한다.

제11조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9호를 10호로 하며, 10호를 11호로 한다.

#### 9. 공원녹지 관련공사

제13조①항 1호,2호,3호,5호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3조①항 4호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4조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, “자는”를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16조 ①항 “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제외한다.”로 한다.

제16조 ②항,③항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9조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<u>별제16조제2항, 제4항 및 영 제59조,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및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위원회 구성)</b>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 <u>경리관</u>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</p> <p>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에 있는 <u>자</u></p> <p>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<u>자로서</u>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<u>자</u></p> <p>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비영리민간단체를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규정에 따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규정에 따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2조(위원회 구성)</b>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재무관</u> -----</p> <p>----- <u>사람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람</u> -----</p> <p>2. ----- <u>사람으로서</u> -----</p> <p>----- <u>사람</u> 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 <u>따른</u> -----</p>

말한다)가 추천하는 자

-----사람

4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

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-----  
-----따른-----  
-----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

5.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·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

5. -----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사람

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

6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사람

**제3조(임무 및 임기)**

**제3조(임무와 임기)**

① 생략

① 현행과 같음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-----  
-----  
----- 사람이-----

③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③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8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**

**제8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**

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①-----  
-----  
----- 따라

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.

②-----  
-----  
----- 따라

다만,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,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제11조(주민참여감독대상자의 감독대상 공사)

1~8.(생략)

<신설>

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·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

10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

③----- 따른 심의

④----- 따라

제10조(위원의 해촉) -----

----- 해당 -----

1. -----

-- 그밖에 사유 등으로 -----

제11조(주민참여감독대상자의 감독대상 공사)

1~8.(현행과 같음)

9. 공원녹지 관련공사

10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·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

11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

제13조(감독자의 위촉)

① (생략)

- 1.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
- 2.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·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
- 3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초·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
- 4.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·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
- 5.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통의새마을지도자·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

제14조(감독자의 해촉) 구청장은 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참석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

제13조(감독자의 위촉)

① (현행과 같음)

- 1. -----  
----- 사람
- 2. -----  
----- 사람
- 3. -----  
----- 사람
- 4. -----따라 -----  
----- 사람
- 5. -----  
----- 사람

제14조(감독자의 해촉) -----  
----- 사람 -----  
-----사람은 -----  
-----

제16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제외한다.

②----- 따라 -----

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 
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 
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자를 선  
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  
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-----따라-----